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과 장 전현진 사무관 고진아	042-481-5213 042-481-5425
		2017년 8월 4일(금) 조간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매체는 8월 3일(목) 낮 12시 이후 게재 바랍니다.	

특허청, 의료기관의 특허 허위표시 등 77건 적발

A의원은 의료기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 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되었다. 그럼에도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 봉합술과 같은 의료기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므로,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함. 다만, 타인의 기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기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음.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진료 분야가 성형외과인 891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재권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재권 허위표시 32건, 불명확한 지재권 표시 45건이 적발되었다고 밝혔다.

특허 받지 않았음에도 특허 받은 제품이나 기술로 허위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부당한 지재권 표시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시행된 기획조사의 결과이다.

적발된 32건의 지재권 허위표시는 ▲ 등록이 거절된 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 출원 중인 지재권을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4건) ▲ 상표, 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한 경우(6건) ▲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18건)이다.

<성형외과의 지재권 허위표시 적발 사례>

 OOOO 통합술 특허등록 OOO 성형외과 전문의들의 임상경험과 지속적 출원한 OOOO 통합술은 보다 안전하고 성공률 기여하고 있습니다.	 * 상표등록 후 특허표시
* 상표등록 후 특허표시	* 등록료 불납으로 소멸된 특허번호 표기

또한, 지재권을 불명확하게 표시하여 혼동을 주는 행위 45건은 ▲ 근거 없이 특허청의 허가·승인받은 제품으로 광고하는 경우 ▲ 특허 등록 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중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 등이다.

특허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한 지재권 표시로 적발된 의료기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일정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특허법 제 228조, 상표법 제 233조 등

아울러, 향후에도 지재권 허위표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등과 협조하여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과 리플릿을 배포하고 올바른 지재권 표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